

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6. 11. 4.] [전라북도조례 제4340호, 2016. 11. 4., 제정]

전라북도

□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토종농작물”이란 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별도로 도지사가 정한 것을 말한다.
2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
3. “농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4. “토종마을”이란 자연마을 중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농촌마을을 말한다.

□ 제3조(도의 역할)

- ① 전라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·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도는 토종농작물을 현지내 보존 및 현지외 보존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제4조(도민의 역할)

도민은 토종농작물이 농업·농촌의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, 농업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력을 통해 토종농작물의 소비와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.

□ 제5조(보존·육성계획 수립)

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1. 토종농작물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
2. 민관정책협의회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3. 토종농작물의 판매, 구매,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
4.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□ 제6조(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·기능)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에 따른 정책방향을 효율적으로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 1. 토종농작물 관련 주요 정책
 2.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
 3. 토종농작물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업무담당국장, 농업기술원 국장, 종자사업소장, 농업인 대표 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·임명한다.
 1. 종자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 전문가
 2. 종자 관련 농업인 대표
 3.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 4.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-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-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⑦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1.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
 2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
 3.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제7조(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)

- ① 협의회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

주재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-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□ **제8조(협의회 의안 제출)**

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**제9조(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 지원)**

-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하기 위하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재배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의 구체적 절차·방법·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④ 사회적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·유통·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 - 1.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
 - 2.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
 - 3.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
 - 4.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

□ **제10조(시행규칙)**
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